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Product : 홍삼분말(Red Ginseng Powder)

Country : 인도(India)

Contents

I. 시장 통계	3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5
2. 무역통계 종합분석	6
3. 품목통계 종합분석	7
II. 경쟁제품 현지조사	8
1. 경쟁제품 선정	10
2. 정량 분석	11
3. 정성 분석	12
4. 현지 방문 조사자료	13
III. 통관 및 검역 정보	16
1. 통관 및 검역 절차	19
2. 관세율 정보	21
3. FTA 정보	22
4. 통관 및 검역 주의사항	23
IV. 인증 정보	25
1. 인증 취득정보	28
2. 제출서류	31
3. 전문가 인터뷰	34
V. 라벨링 정보	35
1. 라벨 표기사항	37
2. 라벨링 예시	39
※ 참고 문헌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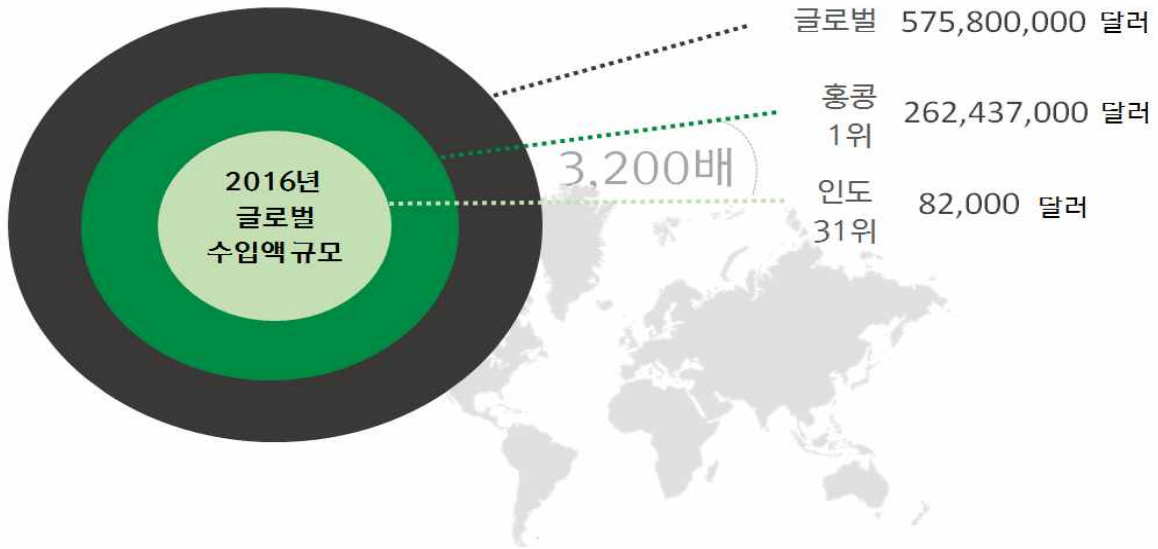


I. 시장 통계

※ 시장 통계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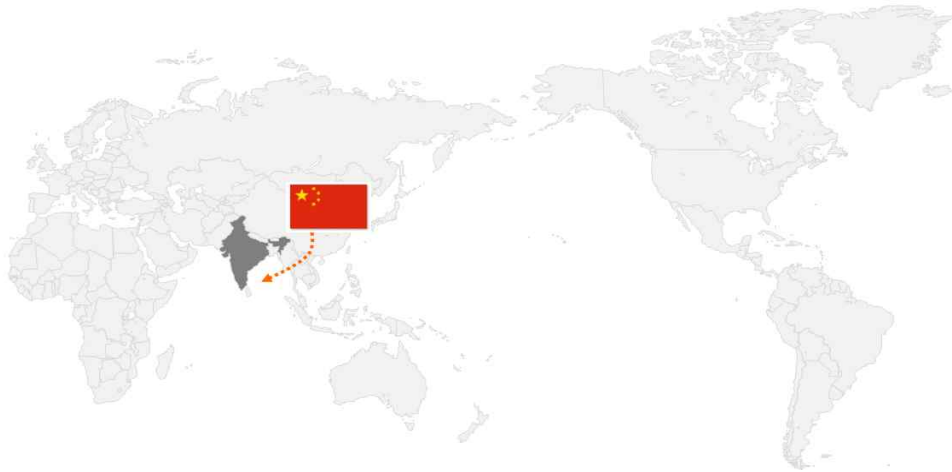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2. 무역통계 종합분석
3. 품목통계 종합분석

시장 통계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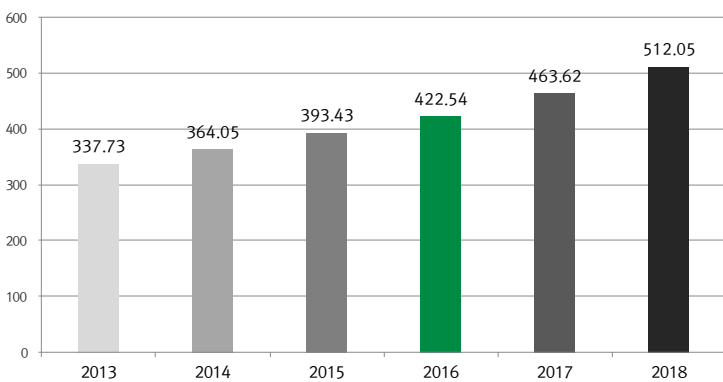


2016년 인도 내 HS CODE 1211.20 품목 수입액 규모

(단위 : 달러)



▶ 인도 전통의약품(Traditional medicines)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글로벌 수입규모
1위 홍콩, 31위 인도
인도 수입상대국
1위 중국
2016년 기준
전통의약품 시장규모
4억 2,254만 달러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HS CODE 확인 사이트

1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
2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
3	인도 관세청 www.cbec.gov.in/index

홍삼분말 품목 통계 기준 설정

홍삼분말 품목의 시장성 판단을 위해 통계 조사를 진행함. 글로벌 및 인도의 수입통계 확인을 위해 HS CODE를 통계 기준으로 설정하고 조사 대상국의 시장규모 파악을 위해 품목 키워드를 조사 기준으로 설정함.

수입 통계 기준, HS CODE 1211.20으로 설정

글로벌 및 인도 내 홍삼분말 제품의 경우, HS CODE 6자리 1211.20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수입통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함. 인도 내 HS CODE 1211.20 품목은 인삼(절단·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포함됨

표 1.1 : 항목별 통계 기준 설정

분류	조사 항목	통계 기준	
무역 통계	글로벌 수입규모 및 성장률	HS CODE	1211.20
	인도 수입규모 및 성장률		1211.20
품목 통계	인도 내 일반의약품 시장규모	품목 키워드	Over-the-Counter Healthcare
	인도 내 전통의약품 시장규모		Traditional medicines

표 1.2 : 인도 내 홍삼분말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인삼
	1211.20.22	홍삼으로 만든 것
	1211.20.2210	가루
인도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20	인삼근(절단·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출처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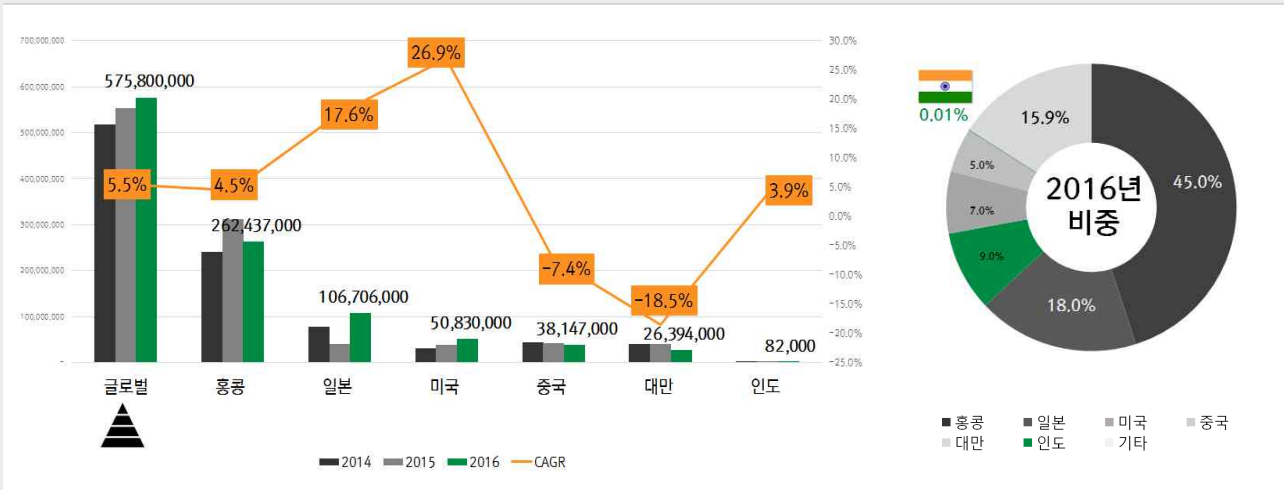
1. 의뢰사 제품에 적합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법 등이 있음. 법적인 효력을 가진 HS CODE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2 무역통계 종합분석

글로벌 수입 통계 분석

표 1.3 : 글로벌 HS CODE 1211.20 수입액 규모 및 비중(2014~2016)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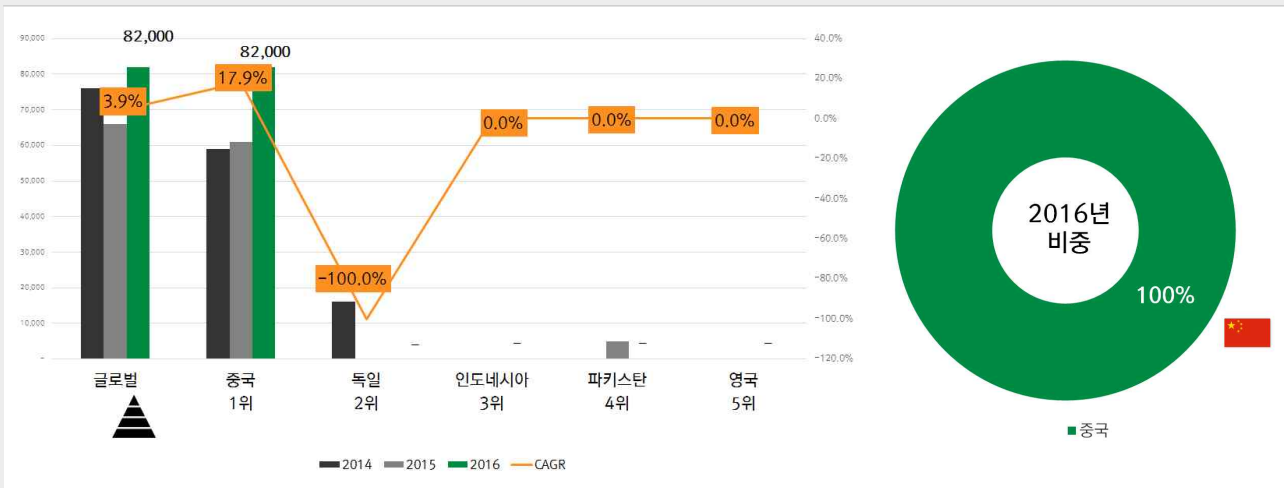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 2016년 기준 HS CODE 1211.20 품목의 글로벌 수입규모는 5억 7,580만 달러로 2014년 이후 3년간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기록함. 수입 1위국인 홍콩의 수입액 규모는 26억 2,437만 7,000달러로 동기간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16년 기준 해당 품목의 인도 수입규모는 8만 2,000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0.01%를 차지하고 있음. 수입 상대국 1위, 2위를 기록한 홍콩과 일본이 각각 45%, 18%의 점유율을 차지함

인도 수입 통계 분석

표 1.4 : 인도 HS CODE 1211.20 수입액 규모 및 비중(2014~2016)

(단위 : 달러, %)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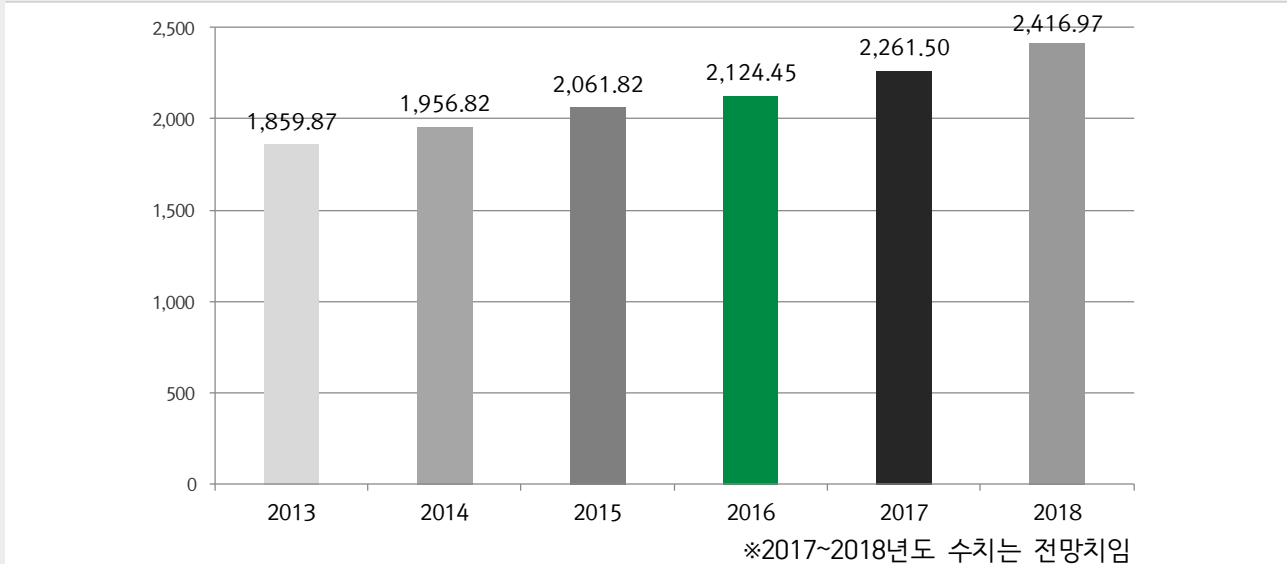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인도 내 HS CODE 1211.20 품목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8만 2,000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함. 2016년 기준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들의 수입규모는 조사되지 않았음. 따라서 수입규모 비중역시 중국이 100%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산 품목의 수입규모는 확인되지 않음

3. 품목통계 종합분석

인도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Healthcare)² 시장규모

표 1.5 : 인도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Healthcare) 시장규모(2013~2018)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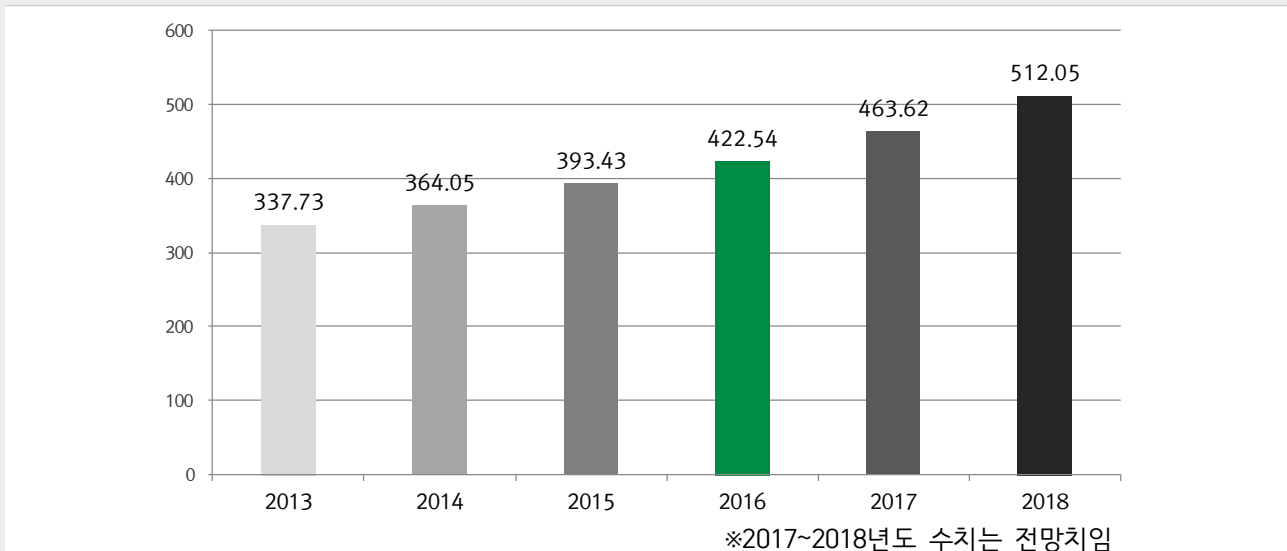
출처 : Global Data(consumer.globaldata.com)

- 인도 내 일반의약품 시장은 2016년 기준 21억 2,445만 달러 규모를 나타냄. 인도 일반의약품 시장은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지방 내 약국 수 증가, 생활 습관병의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24억 1,697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 전통의약품 시장규모

표 1.6 : 인도 전통의약품(Traditional medicines) 시장규모(2013~2018)³.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 Global Data(consumer.globaldata.com)

- 인도 전통의약품 시장은 일반의약품 시장 내에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시장규모는 4억 2,254만 달러로 2013년 3억 3,773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 또한 2018년까지 연평균 8.7%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5억 1,205만 달러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일반의약품 시장 통계에는 비타민 및 미네랄, 전통의약품(고려 인삼 제품 포함),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국소 의약품 등이 포함됨

3. 전통의약품 시장 통계에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대체 의약품 및 허브(고려 인삼 등 포함)로 만들어진 캡슐, 차, 엑기스, 알약 등이 포함됨



Ⅱ. 경쟁제품 현지조사

※ 경쟁제품 현지조사 OVERVIEW

1. 경쟁제품 선정
2. 정량 분석
3. 정성 분석
4. 현지 방문 조사자료

경쟁제품 현지조사 OVERVIEW



수입산			현지산	
제품명 Asian White Ginseng Root	제품명 Ginseng Gold American White Ginseng	제품명 Korean Ginseng Root Extract	제품명 Ginseng for more energy and less stress	제품명 Ginseng Extract&Ginkgo Biloba
제조사 GNC	제조사 GNC	제조사 SOLGAR	제조사 Zenith Nutrition	제조사 Healthkart
제조국가 미국	제조국가 미국	제조국가 미국	제조국가 미국	제조국가 인도

1. 경쟁제품 선정

방문 매장 선정4.

건강식품 판매매장	대형유통매장	약국
GNC	Big Bazaar	Doctors Pharmacy
		
Phoenix Marketcity, Phoenix Market City, velachery Main Road, Velachery, Chennai, Tamil Nadu 600042 India	Phoenix Marketcity, Phoenix Market City, velachery Main Road, Velachery, Chennai, Tamil Nadu 600042 India	Phoenix Marketcity, Phoenix Market City, velachery Main Road, Velachery, Chennai, Tamil Nadu 600042 India

출처 : 현지방문조사(Phoenix Marketcity 내 GNC, Big Bazaar, Doctors Pharmacy, 2017.06)

현지 매장 방문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한 경쟁제품 5개 선정5.6.

제품명	수입산				현지산
	Asian White Ginseng Root	Ginseng Gold American White Ginseng	Korean Ginseng Root Extract	Ginseng for more energy and less stress	Ginseng Extract&Ginkgo Biloba
제조사	GNC	GNC	SOLGAR	Zenith Nutrition	Healthkart
제조국가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인도

출처 : 현지방문조사(Phoenix Market city 내 GNC, 2017.06), Amazon India(www.amazon.in)

분석 지표 설정 - 5개 항목

정량지표		정성지표	
1	100g당 가격(원)	4	포장형태
2	내용물 개수(캡슐)		
3	원료(인삼 함량, mg)	5	제조국가

- 3개 매장 모두 대형 쇼핑몰 Phoenix Marketcity내에 위치함
- 현지매장 방문결과 홍삼 관련 제품은 GNC 매장에서 2개 제품만이 확인되었으며 온라인 조사를 통해 경쟁제품 3개를 추가로 조사함
- 수출입통계의 수입액의 경우 인도에서는 홍삼분말과 관련된 HS CODE를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HS CODE인 1211.20품목 기준 인삼근으로 집계된 수치임. 본 현지조사는 홍삼제조품의 동종 유사제품을 중심으로 경쟁 제품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수출입 통계에서 상위를 차지한 수입국 제품이 조사되지 않을 수 있음

2. 정량 분석

인도 내 유통 중인 홍삼 분말 관련제품, 캡슐 당 가격 평균 371원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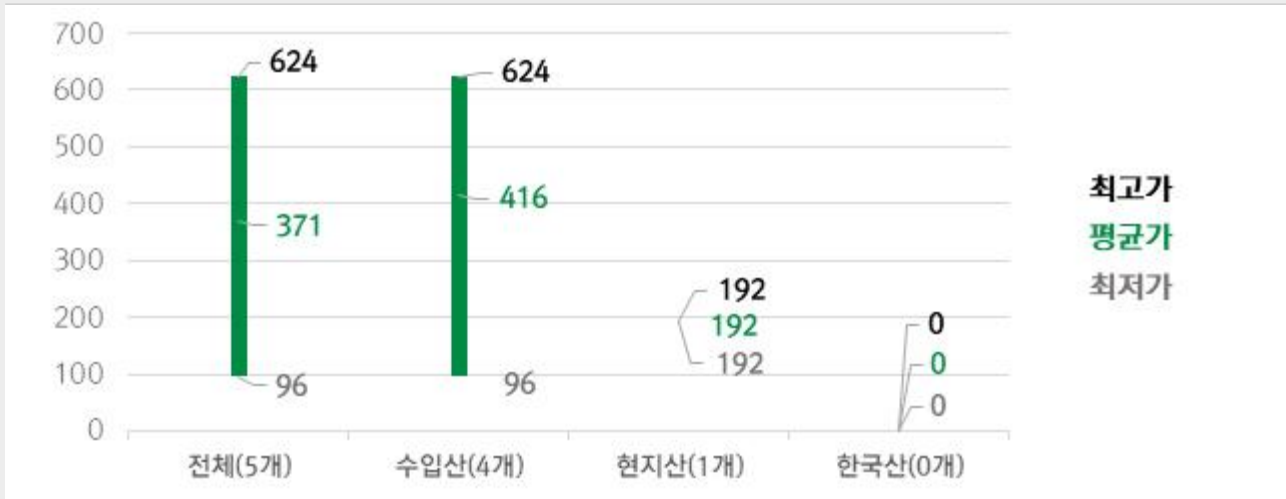
인도 내 판매가 확인된 유사 경쟁제품의 캡슐당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이 371원으로 산출됨

수입산 제품의 경우 현지산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한국산은 조사되지 않음

내용물의 경우 60캡슐에서 최대 100캡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균값은 80캡슐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됨. 제품에 들어있는 인삼분말 함량은 평균 410mg을 함유하고 있음

표 2.1 : 제품별 캡슐 당(Capsule)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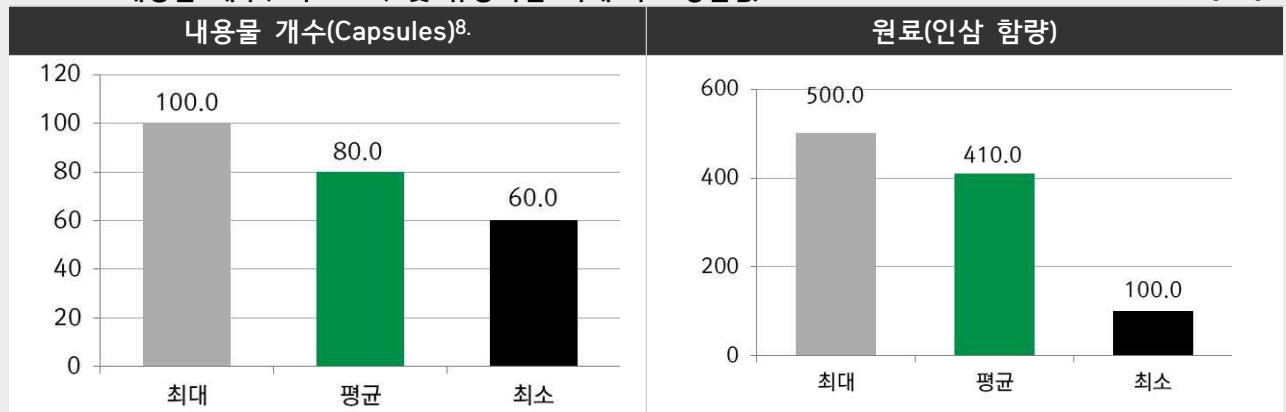
(단위 : 원)



출처 : 현지방문조사(GNC, 2017.06), Amazon India(www.amazon.in)

표 2.2 : 내용물 개수(Capsules) 및 유통기한 최대·최소·평균값

(단위 : g, mg)



출처 : 현지방문조사(GNC, 2017.06), Amazon India(www.amazon.in)

7. 1루피(INR) = 17.66원(KRW) (KEB하나은행 고시기준, 2017.06.20)

8. 모든 제품이 중량은 내용물(캡슐) 개수로 분석함

3. 정성 분석

인도 내 홍삼 관련 제품, 대부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경쟁제품 5개 중 4개의 외장재는 플라스틱 용기로 확인됨. 나머지 1개 제품은 유리병으로 이루어짐.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뚜껑 또한 플라스틱 재질이며, 유리병 제품의 뚜껑은 알루미늄 재질로 확인됨

플라스틱 재질 제품 중 3개는 불투명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으며 나머지 2개 제품의 경우 제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반투명 갈색용기로 포장됨

원료

경쟁제품 5개 제품 모두 인삼 분말이나 인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음. 제품마다 인삼 분말 및 추출물 함유량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인삼분말의 경우 GNC의 2개 제품이 500mg으로 가장 많이 함유함. Healthkart의 제품은 인삼 추출 분말과 더불어 은행잎 추출물도 첨가된 것으로 조사됨

제조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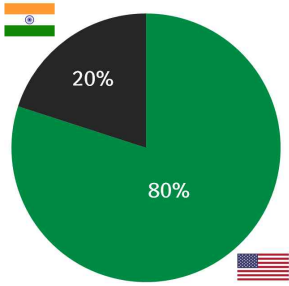
4개의 경쟁제품은 미국산으로 조사됨. 나머지 1개 제품은 인도산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온라인 조사 결과 대부분의 관련제품은 수입산으로 나타남

표 2.3 : 경쟁제품 패키지 분류(외장재)

플라스틱			유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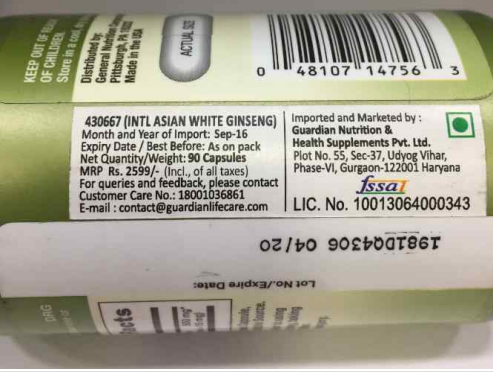

출처 : 현지방문조사(Phoenix Marketcity 내 GNC, 2017.06), Amazon India(www.amazon.in)

표 2.4 : 경쟁제품 제조국가 비율

제품명	제조국	제조국가 비중
Asian White Ginseng Root	미국	
Ginseng Gold American White Ginseng		
Korean Ginseng Root Extract		
Ginseng for more energy and less stress	인도	
Ginseng Extract&Ginkgo Biloba		

출처 : 현지방문조사(Phoenix Marketcity 내 GNC, 2017.06), Amazon India(www.amazon.in)

4. 현지 방문 조사자료

분류		제품 01	제품 02
제품이미지	앞면		
	뒷면		
제품스펙	업체명	GNC	GNC
	제품명	Asian White Ginseng Root	Ginseng Gold American White Ginseng
	제조국가	미국	미국
	용량(개)	90	90
	가격 (루피)	2,599	2,699
	포장형태	플라스틱	플라스틱
	원료	아시아 인삼 분말(재래종 인삼) 500mg, 인삼 사포닌류(3%,15mg)	아시아 인삼근 분말(서양 인삼) 500mg, 인삼 사포닌류(3%,15mg)
취급처	판매확인 매장	GNC	GNC

4. 현지 방문 조사자료

분류		제품 03	제품 04
제품이미지	앞면		
	뒷면		
제품스펙	업체명	SOLGAR	Healthkart
	제품명	Korean Ginseng Root Extract	Ginseng Extract&Ginkgo Biloba
	제조국가	미국	인도
	용량(개)	60	60
	가격(루피)	2,350	699
	포장형태	유리 / 알루미늄	플라스틱
	원료	한국산 인삼 추출물 250mg, 인삼분말 200mg	인삼 추출 분말 100mg, 은행잎추출물, 활택제, 운할유
취급처	판매확인 매장 Amazon India	Amazon India	

4. 현지 방문 조사자료

분류		제품 5
제품이미지	앞면	
	뒷면	
제품스펙	업체명	Zenith Nutrition
	제품명	Ginseng for more energy and less stress
	제조국가	미국
	용량(개)	100
	가격 (루피)	507
	포장형태	플라스틱
	원료	인삼근 500mg
취급처	판매확인 매장	Amazon India

Ⅲ. 통관 및 검역 정보

※ 통관 및 검역절차 OVERVIEW

※ 관세율 정보 OVERVIEW

1. 통관 및 검역 절차
2. 관세율 정보
3. FTA 정보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 인도는 통관거부사례를 공개하지 않아 해당 정보는 제외함

통관 및 검역절차 OVERVIEW

인도 통관 검역 절차도



출처 : 인도 관세청(www.cbec.gov.in)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통관절차	유의사항
물품 도착 및 수입 신고 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경우 사전에 수입물품 통관을 위한 허가 및 인증 구비 필요⁹. - 수입신고 서류상에 오류발생 시 정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류 작성에 유의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 작성 후 가격 신고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수입신고서 세관 전송¹⁰. - HS코드에 따라 특혜관세, 원산지결정기준이 결정되므로 품목 번호 확인에 유의
물품 검사 및 통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는 물품의 금지·제한 여부, 적하목록과 수입신고서 내역의 일치 여부, 신고 가격의 적절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 물품검사는 무작위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만 실물검사를 실시 - 'Green Channel facility' 제도에 의하여 주요 우량·성실 수입자를 Green Channel로 분류하며 수입통관 시 물품검사를 면제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관세평가관이 화물검사 후 관세율을 확정함 - 세관별로 관세납부은행이 상이하므로 납부 전에 은행이름과 지점 확인 필수 - 물품에 이상이 없을 시 통관 승인 완료

출처 : 인도 관세청(www.cbec.gov.in), TradeNAVI(tradenavi.or.kr)

9. 사전 필수 구비 사항에는 수출입자코드(Importer-Exporter Code), 적하목록(IGM, Imort General Manifest)이 있음

10. EDI를 통한 신고방법과 EDI를 통하지 않은 신고방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관세율 정보 OVERVIEW

2017년 인도 관세율 정보

HS CODE 1211.20 품목의 경우 한-인도 CEPA 협정에 의해

협정세율 18%가 부과되고 있음

HS CODE	품명	관세율	
		기본	CEPA 협정세율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20	인삼근	30%	18%

인도 기타 관세 정보

인도의 경우 수입물품에 일반적인 관세 외에

교육세 3%, 특별부가관세 4%가 부과되고 있음

인도 CEPA 협정세율 정보

양허유형 'SEN'¹¹에 해당되어 **협정세율 18%**

TIP_제품 관세율 확인법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확인하거나, FTA 세율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TradeNavi(www.tradenavi.or.kr)'의 'FTA/관세' 메뉴를 활용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음. 인도 사이트의 경우 인도 관세청의 관세율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분류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Tradenavi	www.tradenavi.or.kr
	인도 관세청	www.cbec.gov.in

보다 더 정확한 품목별 HS CODE 및 관세율 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혹은 'FTA 콜센터'의 관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 관세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함

분류	사이트명	전화번호
관세율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FTA 콜센터	☎ 1380

11. 양허유형 SEN :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

1. 통관 및 검역절차

Step 01. 수입 신고 전 준비

수입자는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인도상공부 무역국(DGFT;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으로부터 수출입자코드(Importer-Exporter Code)를 발급받아야 함

또한 적하목록(IGM, Import General Manifest)을 제출해야 함. 제출기한은 해상·항공 운송일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이며, 육상운송일 경우 도착지에 도착 후 12시간 이내임. 적하목록 미제출 시 화물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허할 수 없음

Step 02. 수입 신고 및 가격 신고

수입자는 적하목록 제출 후,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한 신고는 ICEGATE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EDI를 통하지 않은 신고는 수입신고서 4부를 준비하여 2부는 세관에, 1부는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1부는 수입자가 보관해야 함. 수입신고서는 하단 표에 기재된 서류를 수반하여야 함

가격 신고는 2011년부터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 후 세관 당국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Self-assessment'로 이루어짐. 수입신고서는 수입신고서를 제출 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적용 관세율·과세표준·관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가격을 신고함

참고로 한-인도 CEPA 협정은 HS코드에 따라 특혜관세, 원산지 결정기준이 결정되므로 수입 신고 시 인도 HS코드 선택에 신중해야 함

표 3.1 : 수입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 | | |
|---|--|
| • 송장(Signed Invoice) | • 필요한 경우 신용장/환어음 |
|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
| •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항공화물운송장(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Airway Bill) | • 화학물질의 경우 검사보고서 |
| • 필요한 경우 물품 관련 수입 라이선스 | •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등 |

1. 통관 및 검역절차

Step 03.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서류심사는 수입신고 된 물품이 수입금지품 또는 제한품목에 해당하는지 운송인이 제출한 적하목록과 수입 신고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내 상세 품목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중점적으로 심사됨. 세관 당국은 심사 후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받은 수입신고서 중 1부를 수입 신고인에게 반송함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전체 물품에 대하여 실물검사를 진행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서류 심사에 의하고 무작위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서 내 상세설명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함

Step 04. 관세 납부 및 통관 완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서에 업체가 작성한 관세율을 세관에서 승인해주는 방식인데 반해, 인도는 별도의 관세평가관(Customs Appraiser)이 존재하며 화물검사 후 관세율을 확정함. 관세평가를 통해 확정된 관세는 세관이 서류 심사 후 수입신고서 1부를 수입 신고인에게 반송한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 제외)에 납부하여야 함. 인도는 관할 세관마다 지정한 은행의 이름, 지점명이 다르므로 납부 시 유의하여야 함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2. 관세율 정보

HS CODE 1211.20 품목 2017년부터 CEPA 협정세율 18% 적용

인도에서 HS CODE 1211의 경우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로 정의됨. 하위 품목인 HS CODE¹². 1211.20는 인삼근으로 분류됨

인도에서 HS CODE 1211.20에 부과하는 기본 세율은 30%이지만,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한·인도 CEPA 협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18%의 관세율이 부과됨¹³.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의 충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인도, 교육세율(EC) 3%, 특별부과관세율(SCVD) 4% 부과

인도는 HS CODE 1211.20 해당 품목에 교육세율(EC) 3%, 특별부과관세율(SCVD) 4%를 부과하고 있음

표 3.2 : 인도 및 한국 내 HS CODE 분류 및 관세

국가	HS CODE	품명	관세율	
			기본	CEPA 협정세율
한국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인삼		-
	1211.20.22	홍삼으로 만든 것		
	1211.20.2210	가루		
인도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11.20	인삼근	30%	18%

출처 :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2. 실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 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법 등이 있음

13. 2017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로 적용됨

3. FTA 정보

HS CODE 1211.20, 한·인도 CEPA 체결로 2017년 협정세율 18%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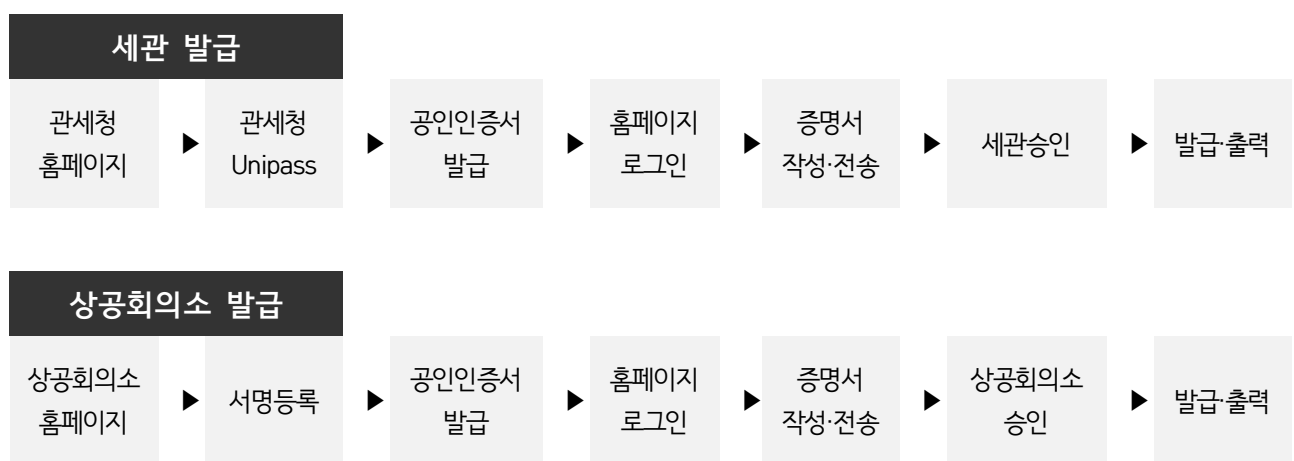
HS CODE 1211.20는 한·인도 CEPA 체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HS CODE 1211.20의 기본세율은 30%이나 CEP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18%가 부과됨. HS CODE 1211.20 품목은 단계별 양허유형 SEN로 규정되었으며,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됨. 2017년은 이행 7년차로서 1월 1일부터 18%가 적용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CEPA 협정세율 적용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CEP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

한·인도 CEPA의 경우 한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대한상공회의소¹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관세청에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전산화함

표 3.3 :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cert.korcham.net)

14. 단, 상공회의소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회원일 경우 무료, 비회원은 7,000이 부과됨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인도 통관, 사전 준비가 관건

인도의 통관은 수입 통관 및 검역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중요함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 서류의 기재 오류나 서류 상호간 불일치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 절차가 2~3주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서류 작성이 필수적임

또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포장명세서(P/L)와 상업송장(C/I)을 컨테이너별로 철저히 작성해야 함. 인도 세관은 한 컨테이너 안에서 박스별로 화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실물 검사가 철저하며 서류와 화물 불일치 시 통관이 불가능함

특히 인도는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운송수단도 노후하기 때문에 내륙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내륙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함

개정된 인도식품 안전 및 규정 주요 내용

FSSAI는 2016년 1월 식품안전 및 기준 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Import) Regulations, 2016을 발표함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식품수입자는 반드시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DGFT)에 식품수입자로 등록하고 식품수입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만일 수입자가 식품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수입을 시도할 경우 식품수입허가서와 수출입 코드(Import-Export Code)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식품수입자는 반드시 Customs House Agent(CHA)를 지정해야 하며 CHA는 식품수입 제반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입자와 같이 책임을 지게 됨.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품이 적재될 경우, 식품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함¹⁵.

15. 헤럴드경제, '인도, '납 라면' 사태 이후 식품수입 규정 강화', 2016.05.11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통관 시 세관 신고서 24시간 내 제출해야

인도로 수출 시 제품의 내용, 가격 등의 상세 정보를 적은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상업적 이용을 위한 수입제품은 통관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임. 제품 내용과 가격 및 거래 내용, 제품의 수량, 생산지, 제품의 가치, 운송수단 등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2017년 3월, 인도 정부는 2017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인도 세관은 세고신고서 관련 규정을 수정함. 변경된 내용은 ‘인도 국내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은 제품을 실은 수송이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근무시간 기준(공휴일 제외) 24시간 이내에 세관신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일까지는 매일 5,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5일이 초과된 후부터는 일당 10,000루피의 벌금이 추가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인도 정부의 통관정책은 규제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대상 국가에 대해 인도 정부는 반덤핑과 같은 일련의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통관정책을 주시하며 해당사항들을 숙지하여 벌금, 수입거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IV. 인증 정보

※ 인증 정보 OVERVIEW

1. 인증 취득정보
2. 제출서류
3. 전문가 인터뷰


인증 정보 OVERVIEW

● 권장인증 : HACCP(인도 국립인증센터, NCHC)

인증 설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통과하면 발행되는 인증으로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함	
발행기관	인도 국립인증센터 (NCHC)	
성격	선택 인증	
제출서류	GMP-GHP에 대한 준수, 부칙 IV에 따른 요구 사항, 공장 도면, 장비 및 기계의 세부 스펙, 용수 분석 보고서, 원재료, FSMS 인증서, 안정성 및 성분 인증서, 생산자 정보, (투자금의) 명의자, 연간매출액·연차보고	
비용	세부품목별로 비용이 다르며, 인도표준국(BIS)로 연락하여 견적 산출이 필요함	
발급절차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현지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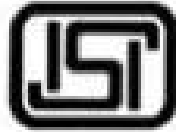
출처: 인도 HACCP국립인증센터(www.haccpindia.org)

● 권장인증 : India Organic (인도유기농인증)

인증 설명	India Organic은 인도 내 유기농제품에 수여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유기농 인증으로 인도농가공식품수출기구가 규정함		
발행기관	인도농가공식품수출기구(APEDA)		
성격	선택 인증		
비용	5,750루피		
제출서류	IEC(수출입업체코드) 인증 사본, 은행계좌보증서		
신청절차	APEDA 웹사이트 등록 -> 온라인 지원 -> 등록비용 지불-> 심사 후 인증 발급		
발급절차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판정 > 인증서 발급		

출처: 인도농가공식품수출기구(APEDA)


● 권장인증 : ISI 마크

인증 설명	제품에 인도의 표준마크인 ISI 마크를 부착하면, 해당제품이 각 제품의 사양에 적합하다는 보증의 역할을 함	
발행기관	인도 표준국 BIS (Bureau of India Standards)	
성격	선택 인증	
비용	각 절차마다 상이함	
제출서류	Application Form (마크사용 신청서), 공장 지도 및 공장 배치도, 공장부지의 입증 서류, 제조설비 및 시험장비 목록, 시험 및 검사절차, BIS의 허가증 교부 이후 승인절차의 준수서약서 등	
발급절차	신청서 제출 → 예비 검사 및 시험 → BIS 마크 부착 허용사후감시	

출처: 해외인증정보시스템(www.certinfo.or.kr)


인증 정보 OVERVIEW

● 권장인증 : BIS

인증 설명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표준규격을 증명하는 인증	
관리기관	인도표준국 (Bureau of Indian Standards)	
성격	선택 인증	
갱신기간	1년	
발급절차	인증 신청서 제출 > 인증 심의 > 인증 발행 > 사후 심사 > 인증 갱신	

출처 : BIS(www.bis.org.in)

● 권장인증 : Agmark

인증 설명	인도 정부에서 농산물에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	
발행기관	마케팅 검사국 (Directorate of Marketing and Inspection)	
성격	선택 인증	
갱신기간	1년	
발급절차	인증 신청서 제출 > 예비검사 > 인증 심사 > 인증비 처리 > 동의서 서명 > 인증 갱신	

출처 : DMI(dmi.gov.in)

1. 인증 취득정보

HACCP 인증 발급기관

기관명 : 인도 국립인증센터
(NCHC, National Centre For
HACCP Certification)
주소 : 2, Vidhya Nagar
Opp.Police Ground , Thycaud P.O
Thiruvananthapuram - 695014

권장 인증 : HACCP(인도 국립인증센터)

HACCP은 위해요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통과하면 발행되는 인증으로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함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임

인증 비용은 세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인도표준국(BIS)의 견적을 받을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높은 수수료일수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또한 인증 수수료는 매년 검사를 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권장 인증 : India Organic(인도유기농인증)

인도유기농인증(India Organic)의 경우 인도 내 유기농제품에 수여되는 공신력 있는 유기농 인증임. 해당 인증은 인도농가공식품수출기구(APEDA)¹⁶가 규정한 인도 국내기준을 적용함. 인증마크 발행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한해 APEDA가 승인한 유기농 인증 인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총 11개의 기관이 공식으로 지정되어있으며 Ecocert, Indcert, IMO control, SGS India, Onecert Asia, Foodcert, BVQI 등이 있음

인증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등록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온라인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한 후 IEC 인증 사본과 은행계좌 보증서의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함. 등록비용의 경우 5,570루피가 부과됨

표 4.1 : HACCP 인증 발급절차

STEP 01. 서류 제출 및 사전 평가

- HACCP 인증 신청서 제출 후 서류 검토 및 서류심사(사전평가) 진행

STEP 02. 현장 평가

- 서류 통과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진행
- HACCP 실시 상황을 평가

STEP 03. 시정 및 검증

-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 완료 후 적합/부적합 심사에 따라 인증서 발급여부 결정

STEP 04. HACCP 취득

- 심사 결과에 따라 HACCP 적용 생산업체에 인증서 발급

출처 : 인도 HACCP국립인증센터(www.haccpindia.org)

16. 인도농가공식품수출기구 (Agricultural &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1. 인증 취득정보

권장 인증: ISI

제품에 인도의 표준마크인 ISI 마크를 부착하면, 해당 제품이 각 제품의 사양에 적합하다는 보증의 역할을 함. 품목에 따라 강제 인증과 비강제 인증으로 나뉘며 국가 규격에 해당함

식품의 경우는 성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어 각각의 성분별로 강제 및 비강제 여부가 달라짐.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완제품에 대한 규격을 강제 인증 대상 품목으로 제시해야 함

제품 인증은 초기 테스트 및 공장 품질 경영 시스템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하여 제품의 규격에 따른 적합성을 결정함

마크 부착 허가를 받은 후에는, BIS와 라이선스 동의서에 서명하고 마크 사용에 대한 연회비를 지불해야 함. 마크 사용비용은 가변적이므로 담당기관에 정확한 비용을 문의해야 함. 인증기간 만료 시 미리 갱신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됨

인증서의 준수여부는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시장 및 공장에서 추출한 샘플의 시험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표 4.2 : 인도 ISI 인증 주요 정보

인증명	Bureau of India Standards ISI mark	
발행기관	인도 표준국 BIS (Bureau of India Standards)	
성격	선택 인증	
비용	1) 신청비용(환불 불가) : 1,000루피(Rs) (약 1만 7천원) 2) 독립시험에 대한 시험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함 3) 심사비용 : 1일째는 4,000루피(약 7만원)가 적용되고, 둘째날 이후부터 일당 3,000루피(약 5만 2천원) 적용 4) 마크사용비용 : 가변적임 5) 연간유지비용 : 1,000루피(약 1만 7천원)	
갱신기간	1년, 한달 전 갱신 신청 필요	
ISI 인증 신청서류	- Application Form (마크사용 신청서) - 공장 지도 및 공장 배치도 - 공장부지의 입증 서류 - 제조설비 및 시험장비 목록 - 시험 및 검사절차, BIS의 허가증 교부 이후 승인절차의 준수서약서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표시 수수료 납부서약서 - 인증서 승인 조건의 준수 및 인증서 정지 및 취소 시 즉시 이행 서약서 - 생산 공정 및 검사단계를 설명하는 흐름도 - 기술 인력에 대한 세부사항 - 제조과정에 필요한 법정허가증

출처 : 해외인증정보시스템(www.certinfo.or.kr)

1. 인증 취득정보

권장인증 : BIS 인증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는 인도의 유통부 산하 기구이자 품질관리기구로 현지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공업 표준규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BIS의 제품인증제도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의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함

BIS 인증은 모든 품목에 대한 강제인증 사항은 아니지만 인도 정부가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제품은 표준마크인 ISI 인증마크¹⁷⁾를 부착할 수 있음

권장인증 : Agmark 인증

Agmark 인증은 마케팅검사국(Directorate of Marketing and Inspection)에서 농산물 관련 표준등급 획득 시 부여하는 자발적인 농산물 표준등급 인증임. 종자류, 과일류, 두류, 식물성 유지 등 주로 농산물과 1차 가공품목을 인증 적용 대상으로 하며 1937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함. Agmark 인증은 농산물 관련 표준등급 획득 시 부여받고 제품에 표시할 수 있음

표 4.3 : Agmark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

구비서류
- Agmark 인증 공인 실험실에서 분석한 시험 결과
- 회사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파트너사 사업자등록증)
- 회사 기본정보(회사명, 주소)
- 제품명
- 사용방법
- 실험실 샘플(분석의 목적으로 공인 실험실에 제출한 것. 실험실에서 인증기관으로 송부하여 성분 분석에 모두 소진하여 샘플이 부족할 경우, 별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생산 시작일(정확한 날짜)
- 생산액·매출액

출처 : Directorate of Marketing & Inspection(dmi.gov.in/GradesStandard.aspx)

17. BIS 인증을 받으면 제품에 ISI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ISI 마크는 주로 전자제품 일부 품목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지만, 식품의 공정과정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인증임

2. 제출서류

HACCP 인증신청서

: HACCP 인증 신청 시 작성·제출해야하는 서류로, 기본적인 회사의 정보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해야함¹⁸.

DOC : MSC-F11-12	ISSUE : 02	DATE : OCT 2015	APPROVED BY: ADG/DDG	PAGE : 1 OF 2
------------------	------------	-----------------	----------------------	---------------

FORM – XII

(To be submitted in triplicate)

**QUESTIONNAIRE FOR OBTAINING PRELIMINARY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FOR OBTAINING LICENCE FOR CERTIFIC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ION AND/OR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AGAINST RELEVANT INDIAN STANDARDS**

1. DETAILS OF THE COMPANY

1.1 Name of the Firm _____

1.2 Address of the Factory/Unit _____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Contact Person _____

1.3 Address of the Registered Office _____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1.4 Status of the Unit _____

Large/Small Scale Industry/Ancillary/Tiny units/Small Scale Service and Business (Industry Related) Enterprises/ small enterprise (see Note)

Note: Please enclose Registration letter from the concerned authority and also see BIS 'Guidelines for Applicants'.

1.5 Indicate whether the unit is a part of some larger organization, if so giv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ing organization

Name: _____

Address: _____

2. NUMBER OF EMPLOYEES

2.1 Indicate the effective number of employees who will be present at the time of audit i.e. employees refers to all individuals whose work activities support the scope of the certification as described by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or HACCP System at the time of the audit.

18. 온라인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bis.org.in/mscdweb/mscd_haccp.asp)

2. 제출서류

HACCP 인증신청서

: HACCP 인증 신청 시 작성·제출해야하는 서류로, 해당 제조품목에 맞게 답변을 기재해야함

DOC : MSC-F11-12	ISSUE : 02	DATE : OCT 2015	APPROVED BY: ADG/DDG	PAGE : 2 OF 2
------------------	------------	-----------------	----------------------	---------------

3. OTHER INFORMATION

3.1 Description of category of activities or processes for which licence is sought

3.2 Quality Management Systems Standard and/or HACCP System Standard Assessment Schedule as applicable IS/ISO _____ and/or IS _____

3.3 Details of assessment and/or licence/certificate already held.

3.4 Details of any Quality Management Systems documentation and/or HACCP documentation

Signature _____

Name _____

Designation _____

For and on behalf of _____

Date:

Seal of the Firm _____

All the three copies of this form are to be signed in original by the authorized person.

2. 제출서류

India Organic 필수 제출 서류(은행계좌보증서)

: India Organic 인증 신청 시 작성·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정확한 정보 및 내용을 기재해야 함

BANK CERTIFICATE
STRICTLY PRIVATE & CONFIDENTIAL

Bank

Branch

Ref. No. A/C No. Date

1. Name of the Company

2. Address:

3. Constitution [Please indicate (√)]

Individual	<input type="checkbox"/>	Proprietorship	<input type="checkbox"/>
Joint Hindu Family	<input type="checkbox"/>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Others	<input type="checkbox"/>	Private Ltd. Co.	<input type="checkbox"/>

4. Name of Proprietor/Partners/Directors/Karta & Co. owners of Joint Hindu Family.

1.	2.
3.	4.
5.	6.

5. Nature of accounts in [Please indicate (√)]

Saving	<input type="checkbox"/>	Cash Credit	<input type="checkbox"/>
Current	<input type="checkbox"/>		

6. Banking Since Years No. of years

7. Business/Company Established/Incorporation on (Date to be indicated)

8. Nature of Business activity (Main activity of the Firm)

9. Other Allied Activities (if known to the Bank)

10. If Limited Company 11. Means of Proprietor/Partners/Directors

Authorized Capital Rs.

Paid up Capital Rs.

12. Name & Address of Associate concern of the firm (if known to the Bank)

13. Experience as to their dealings: Brief Write Up.

The Branch Manager with
Official Stamp

3. 전문가 인터뷰

“가루타입 수출범위 확인”

Q1. 홍삼분말 품목이 필수로 획득해야 하는 인 증은 무엇입니까?

“인도는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Standard)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표준국에서 안정성, 품질 신뢰성을 입증하는 ISI마크가 있으며 이 마크는 외국 인 용과 내국인 용을 따로 운영하며 강제 인증과 비강제 인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인증 심사 및 취득대행 컨설팅사 컨트롤유니온
선임심사원 이광섭 담당자 인터뷰 中 2017.06

Q2. 상기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시 인도 수출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현재 ISI 마크의 강제 인증 품목에 ‘홍삼’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제 인증 품목의 대부분은 우유, 유제품이나 식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서 IS13334(Part1: 표준등급 우유분 말/Part2: 추가 등급 우유분말) 혹은 IS15757(조제식)등의 품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품목이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통관절차에 따른 식품위생증명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증 심사 및 취득대행 컨설팅사 컨트롤유니온
선임심사원 이광섭 담당자 인터뷰 中 2017.06

“HACCP/ Organic India(인도유기농인증)”

Q3. 해당 품목에 취득을 권장할 수 있는 인 증은 무엇입니까?

“HACCP과 Organic India (인도유기농인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증 심사 및 취득대행 컨설팅사 컨트롤유니온
선임심사원 이광섭 담당자 인터뷰 中 2017.06

Q4. HACCP, 인도유기농 인증이 對인도 수출에 어떠한 이점으로 작용합니까?

“HACCP은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된 것을 입증하는 인증이며 전 세계 2위의 유기농산물 생산 국가인 인도에서 유기농인증까지 받는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판매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증 심사 및 취득대행 컨설팅사 컨트롤유니온
선임심사원 이광섭 담당자 인터뷰 中 201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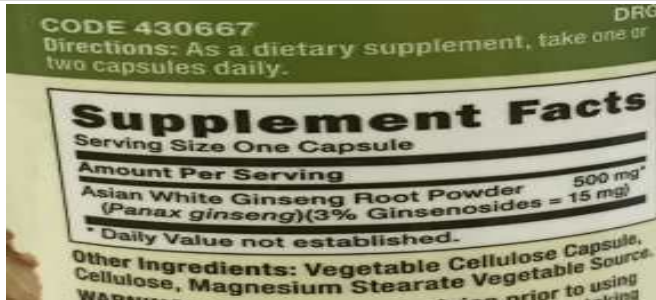
V. 라벨링 정보

※ 라벨링 정보 OVERVIEW

1. 라벨 표기사항
2. 라벨링 예시

라벨링 정보 OVERVIEW

● 인도 가공식품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 제품명
- 제품번호
-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 순 중량
- 원산지
- 유통기한
- 제조·포장·수입일자
- 제조자, 수입자 정보
- MRP(Maximum Retail Price)
- 채식주의자비채식주의자 로고

출처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 2011.08.01

● 인도 라벨링 상세 표기사항

항목	설명
표기 언어	영어 또는 힌디어를 사용함
제품명	포장된 제품의 명확한 명칭을 표시함
제품번호	제품번호 표기가 필요함
원재료 및 영양성분	원료 및 첨가물과 열량(kcal)을 기재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설탕 등의 성분을 그램(g) 또는 밀리리터(ml)로 표시함. 필요한 경우 기타 비타민, 미네랄 함량 표시함
순중량 또는 순용량	표준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함
MRP(Maximum Retail Price)	우리나라의 권장소비자가격과 유사한 것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재함
수입자,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함
유통기한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 남아있어야 함
제조일자, 포장일자, 수입일자	제조·포장·수입된 월, 연도를 기재함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함
채식주의자비채식주의자 로고	모든 채식주의자용 식품은 기호와 색깔 코드를 이용한 신고서가 필요함

출처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1. 라벨 표기사항

라벨 표기 법령

- 인도의 라벨링 규정은 기본적으로 Standard of Weights & Measures Rules of 1977을 따르며, 식품의 경우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4의 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까다로운 인도의 식품 라벨링 규정

인도 정부는 2011년 8월부터 국제 표준에 적합한 위생안전 조항들로 구성된 식품안전표준법(FSSA)을 시행하고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관한 규제를 식품안전표준국(FSSAI)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인도의 라벨링 규정은 기본적으로 ‘Standard of Weights & Measures Rules of 1977’ 을 따름. 또한 식품의 경우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4’ 의 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그러므로 모든 수입 식품들은 이 두 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또한 고기, 계란, 우유, 주요 농산물의 수입업자는 축산·낙농업부(DAHD)의 수입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식품 라벨 내역은 제조자 이름, 주소, 포장업체, 수입자, 공급자, 함유량 순으로 주요 성분표시, 순중량, 제조 및 포장의 월·년도, 유통기한의 월·년도 표시, 원산지, 제품번호, 시장가격(세금 포함), 사용 설명과 합성 감미료를 포함한 영양성분 표시가 포함되어야 함

표 5.1 : 수입식품 원산지에 관한 라벨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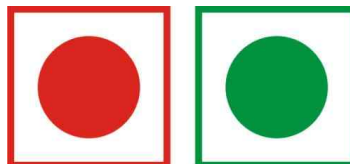
- 식품의 원산지는 식품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제 2국에서 식품의 본질이 바뀌는 가공을 거칠 때, 그 국가를 산지로 간주하여야 함. 또한 인도 밖에서 제조된 식품이 인도에서 포장될 경우, 식품의 외부 포장에 원산지명, 수입자의 상호명 및 주소, 포장업체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출처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표 5.2 : 채식주의자·비채식주의자 표시 로고 (Vegetarian · Non-vegetarian Logo)

모든 채식주의자용 식품은 기호와 색깔 코드를 이용한 로고가 필요함. 채식주의자용 식품에 들어가는 로고는 규정에 따라 지름이 3 ~ 8mm 이내인 초록색으로 채워진 작은 원 모양임

[비채식주의자(Non-Vegetarian) / 채식주의자 로고(Vegetarian Logo)]



출처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1. 라벨 표기사항

라벨링 규정 개정사항

인도의 식품 라벨링 규정은 2011년에 ‘Food Safety and Standards(Pack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 을 통해 일부 사항이 개정되고 현재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개정사항 중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자면 2011년 11월부터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가 라벨에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컨테이너로 운반되는 식품은 원산지과 이름, 주소가 모든 포장 단위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함

또한 식품 라벨은 제품의 포장지에 직접 인쇄되어야 함. 예외적으로 채식주의자 로고, 수입자 상호 및 주소, MRP(Maximum Retail Price)는 스티커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특히 제품의 수입 통관 시 유통기한의 최소 60%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함

표 5.3 : 인도 가공식품 라벨 항목별 표기사항

항목	설명	
1	표기 언어	영어 또는 힌디어를 사용함
2	제품명	포장된 제품의 명확한 명칭을 표시함
3	제품번호	제품번호를 표기함
4	원재료 및 영양성분	원료 및 첨가물과 열량(kcal)을 기재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설탕 등의 성분을 그램(g) 또는 밀리리터(ml)로 표시함. 필요한 경우 기타 비타민, 미네랄 함량 표시함
5	순중량 또는 순용량	표준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함
6	MRP (Maximum Retail Price)	우리나라의 권장소비자가격과 유사한 것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재함
7	수입자,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함
8	유통기한	수입 당시 식품의 유통기한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 남아있어야 함
9	제조일자, 포장일자, 수입일자	제조·포장·수입된 월, 연도를 기재함
10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함
11	채식주의자비채식주의자 로고	모든 채식주의자용 식품은 기호와 색깔 코드를 이용한 신고서가 필요함

출처 :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2. 라벨링 예시

라벨링 예시


제품명 영어로 제품명 기재	수입자 정보 수입회사 정보 기재	채식주의자 로고 채식주의자용 식품 로고 표시
430667 INTL ASIAN WHITE GINSENG Month and Year of Import: Sep-16 Expiry Date / Best Before: As on pack Net Quantity/Weight: 90 Capsules	Imported and Marketed by : Guardian Nutrition & Health Supplements Pvt. Ltd. Plot No. 55, Sec-37, Udyog Vihar, Phase III, Gurgaon-122001 Haryana	
MRP Rs. 2599/- (Incl. of all taxes) For queries and feedback please contact Customer Care E-mail : contact	제품용량 제품용량 기재 LIC. NO. 10013064000343	MRP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 기재

채식주의자·비채식주의자 로고

모든 채식주의자용 식품은 기호와 색깔 코드를 이용한 로고가 필요함

MRP(Maximum Retail Price)

: 최고 소매가로 권장소비자가격임과 유사함
 MRP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

	영양성분 원료 및 첨가물 기재
Other Ingredients: Vegetable Cellulose Capsule, Cellulose, Magnesium Stearate Vegetable Source	원재료명 주 원료명을 제외한 부가재료명 기재

※ 참고 문헌

※ 참고자료

- | | | |
|---|------------------|------------|
| 1.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 | 인도식품안전표준국(FSSAI) | 2011.08.01 |
|---|------------------|------------|

※ 참고 사이트

- | | |
|-------------------------------|-------------------------|
| 1. 한국 관세청 | www.customs.go.kr |
| 2.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unipass.customs.go.kr |
| 3. 인도 관세청 | www.cbec.gov.in |
| 4. International Trade Centre | trademap.org |
| 5. Global Data | consumer.globaldata.com |
| 6. TradNAVI | www.tradenavi.or.kr |
| 7. 대한상공회의소 | cert.korcham.net |
| 8.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www.certinfo.or.kr |
| 9. 인도 HACCP국립인증센터 | www.haccpindia.org |
| 10.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 www.fssai.gov.in |
| 11. 인도농가공식품수출기구(APEDA) | www.apeda.gov.in |
| 12. Amazon India | www.amazon.in |